EU 대두 Hemicellulose의 사용 확대

위원회 (EU) 2020/279에서 식품첨가물 Soybean Hemicellulose를 다양한 식품유형에 GNP 수준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시행 규칙 1333/2008을 개정함.

Regulation (EC) No 1333/2008 부록 II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.

개정내용

(1) in Part C, Group I, E 426는 E 425 다음에 이어 삽입:

E 426	대두 헤미셀룰로오스	최대 용량 지정되지 않음

(2) part E는 다음과 같이 개정:

(a) 식품유형 04.2.6(가공감자), 05.2(제과:입냄새를 제거용 사탕 포함), 05.4(장식, 코팅, 필링: 식품유형 4.2.4에 해당하는 과일필링 제외), 06.5(면), 06.7(가공곡류), 07.2(빵류), 10.2(알가공품), 12.6(소스), 14.1.4(향첨가 음료), 17.1(고체 식품보충제: 영유아식품보충제 제외) and 17.2(액상 식품보충제: 영유아식품보충제 제외)에서 E 426(대두 헤미셀룰로오즈)의 삭제

(b) 식품유형 17(Directive 2002/46/EC에 정의된 식품 보충제)에는 다음과 같이 대체:

17.	Directive 2002/46/EC에 정의된 식품보충제
	도입 부분, 모든 세부 유형에 적용
	색소, 폴리올, 감미료 및 E 200-213, E 338-452, E 405, E 416, E 432-436, E 459, E 468, E 473-475, E 491-495, E 551-553, E 901-904, E 961, E 1201-1204, E 1505, E 1521은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최대사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함. 희석·용해 후 섭취하는 식품보충제는 사용법에 희석배수를 제공하여야 함.

시행일 : 2020. 3. 19